

大學의 教權

金 昌 杰

(仁荷大 教育學科)

1. 教權의 概念

教權의 概念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教權을 教員의 權威와 權利로 파악한다. 먼저 教權을 교원의 권위로 해석하면 이것은 교원의 職業的 權威를 지칭하는 것으로 學生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明示的으로나 默示的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 또는 條件을 의미한다. 이러한 教員의 權威는 개인이 주관적·복단적으로 결정하고 행사하는 支配力으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일정한 資格의 認定과 함께 社會的·制度的으로 부여되거나 인정된 권위를 뜻하며, 거기에는 반드시 사회적 책임과 임무를 수반하는 것이 특징이다.¹⁾

그리고 교원의 직업적 권위는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는 법적·제도적으로 부여받은 권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指導하도록 賦與받은 權威이고, 둘째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권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공 학문

에 대한 專門的 知識·經驗·能力 등을 소유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주어지는 知的 權威이며, 세째로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교육의 方法과 技術에 能한 것으로 認定되는 技術的 權威이다.²⁾

權威(authority)에 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服從의 自發性에 근거하는 心理的인 權力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웨버(Max Weber)의 正當性에 근거한 自發的 順應說이나,³⁾ 바나드(Chester I. Barnard)의 權威受容說⁴⁾ 등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權威는 正當性을 지닌 權力(legitimate power)으로 構成員들에 의하여 受容될 때 권위가 인정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教權은 上述한 세 가지의 權威가 正當性을 지닌 것으로서 학생을 비롯한 관련 인사들에 의해 受容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교원의 권위가 학생을 비롯한 관련 인사들에 의해 受容되지 않을 때는 教權이 維持되기 어려운 것이다.

1) 大韓教育聯合會, 教權侵害事例調查研究, 1985.12.

2) 李敦熙, 教育哲學概論(서울:博英社, 1977), pp.170~183.

3) Max Weber,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trans., by Talcott Parsons (N.Y.: The Free Press, 1947).

4) Chester I. Barnard, *The Functions of the Executive*(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38), pp.189~193.

다음에 교권을 教員의 權利로 해석하면 좁은 의미로는 教職者 的 權利(Lehrerrechte)로 해석된다. 이러한 狹義의 교권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들로 내포하고 있다.⁵⁾ 즉 그것은 ① 일반 행정 당국으로부터의 교육 당국의 독립 ② 자유로운 교육의 권리 ③ 교육과정 제정·운영에의 참여 ④ 부당한 지배로부터의 자유 ⑤ 교육학의 학문적 자유 ⑥ 자주적인 단체 결성권 등이다. 또한 UNESCO/ILO의 ‘教員의 地位에 관한 勸告’(1966)에서 규정된 교권은 ① 教育의 自由權 ② 生活保障權 ③ 身分保障權 등으로 대표되고 있다.⁶⁾

그런데 教權을 權利的인立場에서 보다 넓은 의미로 概念化하면 교육을 받을 權利와 교육을 할 권리를 포함하는 이론바 教育權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廣義의 教育權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된다.⁷⁾

첫째는 교원이 갖는 教育權으로서 이는 교원이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함에 있어서 갖는 권리로前述한 狹義의 教職者 的 權利에 해당된다. 이 권리는 교원의 일정한 資格의 인정과 함께 사회적·제도적으로 부여되거나 인정되는 권리로 사회적 책임과 임무를 수반한다. 또한 이것은 공공 기관이나 父母로부터 교원이 교육을 자유롭게 할 권리를 위임받고 있다는 견지에서 委託權으로서의 教育權이다. 이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교원이 자유롭게 授敎할 권리를 비롯하여 교육과정의 편성권, 교재의 채택·선정권, 교육 방법의 결정권, 교육 평가의 권한 그리고 生活指導 및 訓育을 위하여 주어지는 懲戒權 등이 포함된다.

둘째로는 학생이 갖는 教育權으로서 이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學習權을 의미한다. 이것은 受益權으로서의 教育權으로 世界人權共同宣言(1948) 제26조나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基本權의 하나로서 教育權을 뜻하는 것이다.

세째로는 父母가 갖는 교육권으로서 親權的 教育權이다. 이는 부모가 자기 자녀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권리로서 自然法的 權利를 뜻한다. 民法에도 親權을 행사하는 자는 자녀의 감독 및 교육을 행할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親權的 教育權은 國·公·私立學校의 선택·진학·휴학 및 복학 등 자기 자녀의 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보호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네째로는 設立者의 教育權으로서 이는 설립자가 人的·物的 施設의 管理權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 시설을 설치해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의 義務이며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설립자의 책임이다. 따라서 이것은 권리라기보다는 의무인 것이다. 이는 物的 施設을 건설하여 사용 규칙을 제정하고 시설의 이용을認め하는 등 의무적인 시설 관리권을 가질 뿐이지 교육 활동에까지는 미칠 수 없다.

다섯째로는 國家의 教育權으로서 이는 教育監督權인데 教育請求權의 變形이다. 이것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학교 교육이나 사회 교육 등에 관한 제반 교육 계획 및 정책을立案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助成과 統制의 기능을 행사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여섯째로는 教育獨立權으로서 立法·司法·行政의 三權에 준하는 第4權으로서의 教育權이다. 이것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행하는 교육 행정기능의 政治的 中立性의 보장, 부당한 외부로부터의 지배 혹은 간섭의 배제, 더욱 나아가서 일반 행정에 대한 교육의 優位性을 司法權의 독립에 준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견해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教育에 自然法的 不可侵性을 인정하고 教職을 司法職처럼 專門職으로 규정하자는 데

5) B.R. Wilson, et. al., *Der Lehrer in Schule und Gesellschaft* (München R. Piper & Co. Verlag, 1971), ss.235~242.

6) UNESCO/ILO, “教員의 地位에 관한 勸告”, 대한교육연합회, (1971), p.10.

7) 金永植外 4人, 教育制度의 理念과 現狀(서울: 교육과학사, 1982), pp.13~27; 金丁煥, “教權이란 무엇인가?”, 새교육(1982.4), pp.54~59; 李中, 「教員과 教權」, 教員의 諸問題(서울: 능력개발사, 1974), pp.71~95; 徐廷華, 「教師의 權利」, 教師와 教職社會(서울: 培英社, 1984), pp.168~199; 大韓教育聯合會, 教權 確立을 위한 方案, (1982), pp.5~6.

그 근본적 취지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狹義의 現代的 意味의 教權은 教員의 職業的 權威와 權利를 합친 것으로 權威는 학생 지도에 대한 법적·제도적으로 부여받은 권위·知的 權威·技術的 權威 등이며 權利는 넓은 의미의 교육권을 교직에 收斂한 教員의 權利로 설명될 수 있다.

2. 教權의 侵害

教權을 앞에서 教員의 職業的 權威와 權利로 파악했다. 그런데 轉換期로 볼 수 있는 昨今의 大學內·外의 현장에서 教授의 權威가 어떤 부분에서는 그 受容이 猶豫되거나 拒否당하고 教授의 權利가 侵害당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 대학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권의 침해는 주로 人的 要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대학내의 人的 要因으로는 학생·대학 행정가, 사무 직원 및 동료 교수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대학외의 요인으로는 학부모·상급 행정 기관, 학교 법인, 사회 단체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특히 교육 민주화 과정에서 학생들에 의한 총·학장실 등의 점거·농성과 집기 등 시설물의 파괴 과정에서 야기된 교권 침해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私立大學의 분규와 비리 시정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는 민주화로 가는 길목에서 私學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교육연합회에 보고된 교권 침해 사례는 교수 개인에 관한 것으로 1986년 5건, 1987년에는 4건으로 보고되었다.⁸⁾ 여기서는 學園民主化 과정에서 사회의 物議를 빚고 있는 것 중에서 몇몇의 事例를 중심으로 살펴 본다.

1) 學園民主化 鬪爭

전국 104개 4년제 대학(교)이 학원 민주화 과정에서 그 규모와 분야 등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부분이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23개 국립대학은 그 나름대로 학원민주화 투쟁으로 총장실 점거, 기물 파괴, 교수 비방, 수업 거부, 시험 거부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대학 교권이 도전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 80개의 사립대학(교)도 학원 민주화 과정에서 私學非理 別決이라는 철퇴를 도처에서 받고 있다. 이중 이번 학기에 들어 심한 전통을 겪고 있는 학교만도 30여 개교가 넘는다. 仁川大와 朝鮮大를 비롯하여 우석대·전주대·고신대·수원대·경원대·목원대·동의대·대구대·국재대 등은 재단 퇴진, 두능·여용 교수 퇴진, 학사 참여, 예산 공개 등을 주장하며 총장실 점거·농성, 기물 파괴, 방화, 교수 구타, 수업 거부, 시험 거부 등으로 학교측이나 재단측에 맞서 왔다. 이와 같은 涡中에서 재단이나 학교측에 의하여 또는 학생들에 의하여 直·間接의으로 교권이 침해되는例가 허다하다.

문교부 집계에 따르면 3월 신학기부터 6월 말까지 총·학장실과 이사장실 점거·농성을 벌인 대학은 56개 대학에서 1백 17차례나 됨다고 한다. 이는 전국 1백 4개 4년제 대학의 54%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특히 학생들에 의한 교권 침해는 폭행·폭언 등은 물론 교수의 고유 권한인 수업 내용과 수업 방법에 대한 항의에서부터 수업 거부, 시험 거부를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1988년 6월 26일 조선일보 사회면의 ‘弟子 폭력에 教授 설 땅이 없다’의 제하의 기사에서 “학생들의 과격한 집단 행동이 잣아지면서 대학의 교권이 뿌리째 흔들리고 교수의 권위는 진흙탕 속에 빠져 있다. 총·학장 집무실은 시위 주도 학생들의 요구 관철을 위한 ‘공격 목표’가 되었고 교수들에 대한 모독 행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고 대학마다 우려하고 있다……”하고 다음과 같은 몇몇의 事例를 제시하고 있다.

① 서울대 사범대朴道潤은 교수들 대화에 끼어 들었다가 주의를 받자 “당신이 뭔데 참견하느냐”며 거칠게 항의하는 것을 법대李作장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제지하려 했으나朴潤이

8) 大韓教育聯合會, '87 教權侵害事件 및 教職相談處理現況, 1988.

계속 대들어 뺨을 한 차례 때리자 박군은 “이 × × 놈 네가 뭔데 사람을 때려”라며 폭언을 퍼부었다(1988. 6. 23).

② 서울교대 도서관장 金교수는 무능 교수 되진을 요구하며 학장실 점거 농성을 벌이던 학생들을 제지하기 위하여 교내로 들어가려다 폭행을 당했고 채육과 蘇교수는 학생들과 마찰 과정에서 유리 조각에 얼굴이 찢어졌다(1988. 6. 17).

③ 한양대 경제학과 金군이 교수 연구실 유리창을 깨어 자해한 사건과 관련, 교내 계시판에 대자보를 붙여 林모 교수는 제자가 자해를 하는 데도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잠근 비인간적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林교수는 실제로 자해하려는 金군을 말렸다(1988. 6. 21).

④ 경남대 金모 교수와 鄭모 교수는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에게 성적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용 교수로 몰려 결국 金교수는 사표를 냈고 鄭교수는 교환 교수로 미국으로 떠났다(1988. 2).

⑤ 동국대 학내 민주화에 대한 학교측과의 잠정 합의 사항에 학사 일정 전반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의 학생 참여, 예산 및 장학금 내역 공개 등을 학교측이 받아들임으로써 학사 행정에 학생의 개입이 이루어졌다(1988. 6. 24).

2) 학생들의 教權挑戰에 교수 사퇴 결의

학생들의 과격한 행동이 교수의 교권을 위협한다고 느껴 교수들이 자진하여 교권 수호의 차원에서 사퇴 결의를 한 사례가 있다.

① 부산대 예술대학 학생들이 음악과 李모 교수를 무능 교수로 규정하고 李교수의 연구실에 난입, 집기를 밖으로 끌어 내어 불 사르고 연구실에 못질을 한 뒤 학장실과 서무실을 점거 농성을 한데 대해 교수들이 설득했으나 무위로 돌아가자 예술대 47 명의 교수가 학생들의 이같은 요구가 계속될 때에는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1988. 6. 25).

②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유학과 학생들은 교수와 학생이 같은 수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학사운영을 논의할 것, 무능 교수 2 명 퇴진, 역사철학적 관점을 가진 교수 충원 등을 요구하며 徐모, 林모 교수의 연구실 집기를 들어내고 문에

못을 박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자 유학과 교수 6 명 전원이 교권 수호의 차원에서 학교측에 사표를 제출하였다(1988. 6. 29).

③ 부산 수산대에서는 학생들이 학기말 시험을 거부하며 농성을 벌이자 李모 교수가 학생들에게 학기말 시험을 보도록 권유하다 학생들이 학장실을 점거, 李교수 퇴진을 요구하여 철야 농성을 벌이자 교권 수호의 차원에서 5 명의 학과 교수 전원이 학교측에 사표를 제출하였다(1988. 6. 25).

3) 建國大 農大學長 自殺

학교측이 농대 농장 부근에 학교 설립자의 아호를 딴 ‘常虛 기념 도서관’을 착공한 후 1만 7천여 평의 실습 농장 중 9천여 평을 도서관 진입로 및 조경 구역으로 사용하기로 하자 실습 농장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며 총장실 점거 농성과정에서 빚어진 사건이다. 李학장은 학생들에게 “학교측이 실습 농장을 따로 마련하기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적당한 땅을 물색중이니 너무 성급해 말고 기다리자”고 여러 번 설득했으나 학생들은 “학교측이 이미 4년 전에 도서관 신축 계획을 세워 놓고도 실습 농장 부지를 확보하지 않는 등 성의 없는 자세로 시간만 끌어왔다”며 농성을 계속하였다.

자살 전날에도 동료 교수들이 농성 학생 대표들을 만나 설득하려 했으나 학생들이 면담조차 거절하자 “쉬고 싶다”며 혼자 연구실에 들어가 학장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이것은 학교측이나 학생들에게 모두 교수의 권위가受容되지 않는 극한 상황에서 빚어진 애석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4) 서울대학교 總長室 亂入

총학생회측이 학교 당국에 여름 방학 농촌 봉사 활동 등 지원금 500만 원과 지원 버스 50대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으나 학교측은 두 차례의 학·처장 회의를 통해 학칙상 농촌 봉사 활동 지원을 위한 謫算 轉用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짓고 대신 보직 교수들이 개인 돈을 얼마씩 각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제의했으나 학생들은 공식적인 지원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고 총장실에 난입

하여 짐기 등을 부수었다(1988. 6. 24).

이에 앞서 학생 50여 명이 학·처장 회의 중 회의실에 몰려 들어가 공개 토론을 요구하다 결국 학·처장들과 학생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의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 교수에게 ‘배 부른 돼지 놈’, ‘쓰레기 같은 ××’ 등의 욕설과 야유가 터져 나왔고 사제간에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총장실 입구 철문을 부수는 학생들을 말리던 한 여교수에 대해 “아줌마가 여긴 웬 일이야?”라는 빈정거림도 있었다. 이후 교권 수호의 상징으로 과거된 총장실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학생 11명이 정계 처분당했다.

5) 水原大 教授 再任命 脫落

학생들의 학원 민주화 투쟁이 과격하고 심각해지고, 교수들에게도 심한 불신을 보이자 사태 수습을 위해 교수협의회를 발전시켜 회장에 瞿教授가 선출되었다. 이후 교수협의회는 대학을 구성하는 재단, 학장, 교수, 학생 등 4 요소의 位相定立의 논리를 주장하였다. 즉 재단은 재단의 교육 기능, 학장은 학교 운영의 기본 기능을 행사하며 교수는 교수 본연의 교수상, 학생은 학생 본분을 지킬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李학장은 전체 교수 회의에서 재단이사장, 교수, 학생에게 보내는 학원 민주화 선언을 발표했다.

학장의 학원 민주화 5 원칙은 ① 학장이 정당한 인사·재정권을 행사한다. ② 교무위원을 경질한다. ③ 기획실을 폐지하고 사무처 신설 등 행정적 전년 개편을 단행한다. ④ 민주 학칙을 제정한다. ⑤ 교수협의회를 인정한다 등이다. 그러나 재단 이사장의 태도는 완강하였다. 李학장은 민주화 선언 이를만에 이사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이후 학내 분규는 악화 일로를 치달리다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소강 상태로 접어들자 학교측은 학생 정계, 재단측은 교수 정계를 들고 나왔다. 교수 정계의 명분은 교수협의회가 불법 단체이며 학생들을 자주 선동했다는 것이다.

大學人事委員會는 교수협의회 회장인 瞿교수와 교수협의회 정관 기초위원인 梁교수 등 3명

을 재임명에서 탈락시켰다(1988. 2. 29). 학교측은 재임용 탈락의 공식적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으나 이사장의 비공식 석상의 발언 등으로 미루어 보아 교수협의회 활동이 작용했다고 교수들은 보고 있다.

6) 朝鮮大 教授 集團 職位解除

조선대 분규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조선대 ‘문제 교수 심사 소위원회’가 前 朴總長 밑에서 주로 补職을 맡거나 학생들에게 문제 교수로 지목된 32명의 교수를 어용 무능 교수로 몰아 직위 해제하도록 학교측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이에 승복하지 않고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계와 문교부도 教權 侵害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여 학교측도 신중히 대처하고 있다. 교수의 직위 해제는 적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과 학교측과 학생들은 학원 민주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물러나야 하는 32명의 직위 해제는 최소한의 선으로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7) 徐寬模 教授 發表論文 問題

충북대 徐寬模 教授가 ‘중간 諸 계층의 구성과 민주 변혁에서의 직위’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검찰로부터 소환을 받았으나 徐교수는 이에 대해 “당시의 심포지엄은 순수한 학술 행사였고 발표된 논문도 학술 논문 이상의 것은 아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서울지검 공안부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헌법상의 기본권인 학문적 견해의 발표의 자유·양심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을까 극히 우려된다.

이상의 教權과 관계되는 事例는 1학기에 일어났던 것 중에 紙上에 발표된 것들을 중심으로 몇 개만 소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교권 침해 사례는 오히려 발표되지 않은 것이 더 많을 것이다. 그 이유는 교권 침해가 事件으로 부각되려면 침해 당사자의 소원이나 소청이 있거나 사회의 물의를 일으켜야 하기 때문이다.

3. 教權의 確立

轉換期에 있어서 學園民主化 過程에서 혼들리

는 教權을 確立하고 摊護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학교육과 관계된 관여자들이 본래의 位相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大學의 自律性이 伸張되어야 하고 教授의 身分이 保障되어야 하며 社會的 認識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1) 關與者들의 位相 定立

대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은 教授를 비롯하여 學生, 學校, 財團, 行政 당국, 학부형 등이다. 물론 간접적으로 사회인이나 사회단체 등이 관계될 수 있다. 교권 침해는 이를 관여자들이 각자의 位相을 지키지 못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教授는 연구·교수·봉사의 기능을 십분 발휘함으로써 專門職으로의 그 權威가 確保된다. 學生은 학생의 본분을 다함으로써 학생으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학교, 재단, 행정 당국은 교수와 학생이 교수·학습 등 제반 교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助長·後援해 주며 調整·統制함으로써 그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주어진 권한이나 기능을 그 이상이나 그 이하로 발휘할 때는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어 이들의 位相은 혼들리게 된다. 과거에 학교나 재단, 행정 당국이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이나 기능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그것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연의 位置에서 벗어나 교수와 학생의 권한과 기능이 위축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것은 정부의 정권 유지적 차원과 밀착되어 교수와 학생은 그 행동 반경이 더욱 좁아져 움츠려 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그것이 제6공화국을 맞이하여 각 방면의 민주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교육의 민주화가 교수와 학생에게 본연의 권한과 기능을 발휘하도록 촉구시켰다. 교수는 교수협의회, 교수평의회 등을 통하여 총·학장을 直選하는 등 본연의 位置로 돌아오려고 노력하고 있다. 학생은 과거에 억압되었던 학생의 권리(?)를 주장하며 그간에 있었던 학원 비리를 들추어 내어 이를 시정하려고 하며 學習權을 보다 확장하려는 과정에서 총장실 겨냥 능성, 어용 무능 교수 퇴진, 수업 거부, 시험 거부, 교수 구타 등 대학교권에 대한挑戰的 手段을 동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涡中에서 과거에 학교, 재단, 행정 당

국 등에 본의전 그렇지 않던간에 近接했던 교수들은 학생들에 의해 어용·무능 교수로 몰리고 민주화 과정 중에서 학생의 편에서 학원 자율화에 힘썼던 교수는 학교, 재단, 행정 당국에 의해 制裁받는 경우도 생기고 하여 지금의 教授들이 이야말로 그들의 位相를 찾아야 할 때이다.

그리므로 대학과 관련된 각 관여 집단들은 그들의 본연의 位相를 찾아 相互間의 位相을 定立해야 大學의 教權이 確立될 수 있다.

2) 大學의 自律性 伸張

大學의 自律性에는 教授의 自律性, 學生의 自律性과 學園 運營의 自律性들을 포함하고 있다.

教授의 自律性은 大學의 學問의 自由思想에서 유래된 것으로 교수가 자유롭게 가르치고, 연구하고, 발표하고, 생각하고, 믿는 등의 교수의 자유, 연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신앙의 자유 등을 말한다. 이것은 교수가 진리 탐구를 위하여 理性的 비판과創造的 연구를 자유롭게 수행하는 전제 조건이 된다. 이러한 자율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교직의 전문성·윤리성과 함께 신분 보장을 강화해야 하며 이와 같은 것은 교직 단체를 통하여 추진해야 한다.

學生의 自律性은 學習權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교와 진로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배우고, 학생회 활동, 클럽 활동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등의 선택의 자유, 학습의 자유, 활동의 자유 등을 말한다. 學生의 自律性도 학문의 자유 사상에서 유래되어 學習의 自由, 活動의 自由에서 정치·경제 생활에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學園 運營의 自律性은 학교가 教員人事, 學生人事, 教育課程 編成·運營, 施設 管理, 학교 재정 등 학교 운영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大學은 自主的 權限을 가지고 多元的 價値의 인정을 전제로 광범한 參與에 의한 의사 결정을 하여 권한의 위임에 의한 지도성의 共有形態로 과업을 수행하고 스스로 評價하여 責任을 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3) 教授의 身分 保障

교원의 身分 保障은 教職의 安定性을 확보하고

능률을 향상시키며 士氣를 진작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교원의 신분상의 권리로는 신분 보유권, 직무 집행권, 직명 사용권, 생소 제기권 등을 포함한다. 법률상 교원의 신분 보장은 明文化되어 있다. 헌법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제7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意思에 反한 身分措置를 금지하고 있다(동법 제68조). 또한 교육법에는 교원의 地位가 優待되어야 하며 그 신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동법 제13조). 교육공무원법은 이외에도 교원의 신분 보장에 관하여 휴직의 사유, 휴직 기간, 정년, 교원의 不逮捕特權, 苦衷處理制度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에準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當然退職, 職權免職, 職位의 解除, 降任 등은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私立學校 教員은 그 임무와 특수성에 있어 교육 공무원과 같이 공법상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학교 법인 등과 사법상 관계에 있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準用하게 되어 있고(사립학교법 제55조), 신분 보장에 있어서도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으며(사립학교법 제58조의 2), 교원 불

체포 특권도 교육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보장하고 있다(사립학교법 제60조). 이런 점에서 보면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그 신분을 보장받고 있어 교원의 법적 지위 내지 신분상의 권리에 있어서는 국·사립간에 거의 동일하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그 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고 학교 법인의 독자적인 규정에 일임되고 있다.

이렇듯 법규상으로 보면 교원의 身分 保障은 거의 완벽한 상태에 가까운데도 교원의 신분 문제와 관련된 교권 침해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學園民主化 過程에서 일어나는 身分上의 문제는 再任命制 運營에 있어서客觀的인 基準 適用의 문제와 국립대학(교)의 경우 당국에 비협조적인 교수에 대한 압력, 사립대학(교)의 경우 재단과 학교 당국에 비협조적인 교수에 대한 압력, 그리고 반대로 학생들 주장에 동조 혹은 호의를 보이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학생들에 의한 압력이 작용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政治圈을 비롯한 言論의 壓力を 받는 경우도 있다.

眞理 探究를 위하여 계속적인 學問的 批判을 전제로 하는 大學社會에 있어서 그들의 思考와 다르다고 하여 교수가 매도당하고 신분상의 불안을 느낀다면 대학의 발전이 심히 우려되는 것이다.

*